



[요약본]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2023. 8. 30.

사법행정사무회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1. 재판중계의 필요성 및 논의 경과

가.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헌법상 쟁점 및 의의

▣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의 실현 형태로서 재판중계방송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판중계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적 환경에서 공개재판의 원칙을 실질화·고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판의 공개 목적을 밀실재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데서 나아가 재판의 공개 및 중계를 통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사법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도 그 목적으로 본다면, 재판중계방송은 공간의 제약이나 방청자 수의 한계가 거의 없는 최대 공개로서 그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라본 재판중계방송

- 법정의 물리적 수용인원의 한계는 공개재판 원칙의 내재적 한계 사유로 이해되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과 방송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질적 의미의 재판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재판중계방송의 확대 요청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건 등에서 방청 수요가 법정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재판장이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한 후 추첨을 거쳐 그 소지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방청을 허용함에 따라 방청권 획득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사례는 이미 드물지 않음

▣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는 재판중계방송

-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법부의 가장 본질적 역할인 재판과정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임

▣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관점

- 최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등장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확대됨
- 재판중계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
 -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중계 과정에서 피고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의 사적 생활관계가 노출되면서 심각한 사생활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며, 심지어 범행을 저지른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적지 않고, 디지털정보의 특성상 피고인 등 소송참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해질 수 있음

▣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판중계 시 법관이 사건의 실체보다는 절차적 측면에 치중하거나 여론을 의식한 재판을 하게 되면 사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음
- 증인들이 카메라가 설치된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려 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재판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어 결국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있음



▣ 재판중계방송은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의 실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으나,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한 기본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음

- 재판중계방송의 허용은 대립하는 여러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알 권리의 보장이 훨씬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사생활침해 및 사법목적의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
- 재판중계방송의 허용요건, 중계방송의 주체 및 중계방송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둬으로써, 재판중계방송으로 인한 재판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와 사법의 공정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나. 현행 법령체계에서 재판중계방송의 허용 여부 등에 관한 검토

▣ 법원조직법 제59조 등에 따라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재판중계방송 가능

- 법원조직법 제59조
 -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녹화, 촬영 외에 중계방송을 재판장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계방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재판 절차 내지 시기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법원조직법 제59조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후문 및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후문에 따른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영상재판의 인터넷 중계를 공개 방법에 포함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② 법 제287조의2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

▣ 재판중계에 관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같은 문단 내에서 '규칙'이라 한다)」의 이원적 규율

- 규칙은 ① 제4조에서 신청 및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이하 같은 문단 내에서 '촬영등행위'라 한다)과, ② 제6조에서 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는 다음과 같이 중계방송의 포함 여부와 대상 절차, 요건 등을 달리함

구분	규칙 제4조	규칙 제6조
개시	신청 및 재판장 허가	재판장의 명령
중계방송	포함	불포함 ☞ 소속법원 또는 원격지법원 내 시설로의 중계만
대상 절차	공판·변론의 개시 전/ 판결 선고만	대상 절차에 제한 없음
요건	원칙: 당사자의 동의 요함 예외: 공공의 이익	원칙적 동의여부 불문, 재판장이 중계 목적 촬영등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 열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

- ①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¹⁾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1)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촬영 등 행위'로 지칭하고 있음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끈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 규칙 내용에 의하면, 하급심 재판중계방송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의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고 공판 또는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하급심 재판중계방송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실정

다. 재판중계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1) 연혁 및 계기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대하여 법원 안팎에서 재판중계방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음

- 2013년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및 선고록 지연중계방송의 형태로 송출
-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
 - 2014. 8. 6. 규칙 제6조를 신설하여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세월호」 사건 공판을 유족들이 쉽게 방청할 수 있도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생중계한 바 있음
 - 2017. 8. 4.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재판장이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중계방송의 범위를 확대
-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변론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녹화 중계방송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론사를 통하여 생중계방송 하였음

▣ 2020년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영상재판 확대

- 2020. 6. 1.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영상재판 근거 마련
- 2021. 8. 17.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의 범위 대폭 확대
- 개정 민사소송법(2021. 8. 17. 일부개정 되어 2021. 11. 18. 시행된 법률 제18396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존 민사소송규칙에서 영상재판이 인정되던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기일 및 심문기일에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함(제287조의2 제1항)
 -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87조의2 제2항)



- 감정인신문에서만 허용되던 인터넷 화상장치를 증인신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327조의2 제1항)

● 개정 형사소송법(2021. 8. 17. 일부개정 되어 2021. 11. 18. 시행된 법률 제18398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피고인에 대한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영상재판 실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구속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72조의2 제2항)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제266조의17 제1항)

- 증인 등에 대한 영상신문 범위를 확대함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제165조의2 제2항)

2) 주요 외국의 현황

■ 해외 재판중계방송 현황 요약

재판중계방송 유형	해당 사례
원칙적 허용	미국 각 주(州)법원, 영국 대법원, 프랑스 헌법재판소, 중국,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분적 허용	영국 하급심 법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특정 사건에만 예외적 허용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원칙적 금지	미국 연방법원, 독일 각급법원, 프랑스 법원, 일본

■ 대체로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재판중계방송에 관하여 과거보다 진전된 관점에서 재판중계방송의 확대를 검토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3) 재판중계의 기부 및 필요성

▣ 재판중계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 대립

● 재판중계 불가론

- 무분별한 편집·보도로 인한 정보 왜곡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사법부 신뢰 저하 우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 등 재판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
- 재판에 참여하는 법관, 검사 및 변호인/대리인과 방청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 (또는 특정 법관, 검사, 변호인/대리인 등에 대한 보복 내지 ‘마녀사냥’ 우려)
-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우려(증인의 증언 거부 가능성, 재판중계로 인하여 경직되거나 오해 소지 질문을 피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소극적일 가능성)
- 일부 법관, 검사, 변호인 등이 유명세를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

● 재판중계 허용론

- 재판절차 방송으로 인한 오보 감소로 사법시스템 신뢰 제고에 도움, 즉 법정 내 카메라 인입은 오히려 재판 공정성을 고양시킬 것이라고 함
- 재판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대한 승복률은 높아질 것이고, 일반 대중 역시 재판이 늘 카메라의 감시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므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에 도움
- 재판은 어차피 공개된 이벤트이고, 재판중계는 양적 관람객 증대에 불과(질적으로 상이한 공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관점)



-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사법시스템에 관한 교육적 효과 기대
- 판사, 검사, 변호인/대리인의 직무수행 성실도 제고 기대
-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상식에 어긋나는 주장, 위증 주저)

■ 사법부 구성원의 시각

- 2017년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1,013명, 응답률 34.39%) 실시 ⇒ 법관들의 관점이 다양하게 분포
 - 제1·2심 주요사건의 재판 과정 전부·일부에 대한 중계방송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67.82%(전부 중계방송 허용 15.30%, 일부 중계방송 허용 52.52%),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2.08%
 - 재판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에만 맡기기보다는 사전에 규칙으로 어느 정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71%, 사전에 규칙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25.96%
- 2023. 5.말~2023. 6.초 (유)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용역단'이라 함)가 실시한 재판중계 활성화 및 법원방송시스템 구축에 관한 설문조사 역시 재판중계방송에 관하여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 재판공개 원칙의 구현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중계하는 것에 대하여, 법관 중 긍정의견은 44.7%인 반면 일반직 중 긍정의견은 55.7%
 - 직종 세분류별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76.2%) 및 서기관 이상(77.2%)이 재판중계 확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함
 - 사무관(68.8%), 고등법원 판사(56.5%), 주사 및 주사보(53.4%)는 긍정응답이 많은 반면, 서기 및 서기보(48.0%), 지방법원 부장판사(44.1%), 지방법원 판사(38.0%)의 경우 부정응답이 보다 많았음

■ 일반 국민의 시각



- 재판중계방송을 통해 법정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국민 84% “공익 큰 중대사건 재판중계방송 허용해야”(2017. 8. 31.자 연합뉴스 발췌)]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공익이 큰 중대사건은 1심이나 2심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성인 남녀 1천41명을 대상으로 21~26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공익이 큰 중대사건 재판의 중계방송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

응답자의 67.7%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같은 인격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공인일지라도 레저나 쇼핑 등 순수한 사적 영역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72.2%)도 매우 많았다.

[공개재판 원칙 실현 위해 '재판중계' 활성화해야(2022. 5. 23.자 법률신문 발췌)]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중요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청권 배부를 기다리는 장사진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면 과연 공개재판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작년 11월 개정 민·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비대면 영상재판의 활성화가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재판중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이제는 장소적 개념의 법정을 열어두는 것만으로 공개재판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지금이 재판중계를 통해 공개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 2023년 정책연구용역단이 실시한 재판중계 활성화 및 법원방송시스템 구축에 관한 설문조사 중 일반국민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일반국민은 대체적으로 재판중계방송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매체를 통해 중계하는 것’에 대한 일반국민의 긍정의견은 87.9%
- 대법원은 2013. 3. 21. 대법원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하여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한 이래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YouTube 대한민국 법원 채널 등을 통해 대법원 공개변론 및 선고 중계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앞서 본 정책연구용역단의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



이 제공하는 공개변론 및 선고의 재판중계를 시청한 일반 국민들의 경우, 성별, 지역, 연령에 상관 없이 긍정적인 시청경험(46.9%)이 부정적인 시청경험(7.8%)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남

■ **소결론: 재판중계의 부분적 허용이 타당**

- 재판중계를 통한 공개재판주의의 충실한 구현, 사법신뢰 제고의 필요성
 - 증인 및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는 카메라 위치 조절,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 지휘 등으로 해결 가능
- 재판중계는 허용하되,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규율하는 방향을 제안
 - 이후 시행 결과를 참조하여 재판중계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실시할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법부 내·외부의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을 통한 내부 점검 필요

라. 재판중계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결과

1) 경과 및 주요 활동내용 등

- 총 12명(법관 11명 및 비법관 재판연구관 1명)으로 재판중계연구반을 구성하여, 2022. 7.부터 2023. 2.까지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음
- 재판중계방송을 도입할 경우 그 허용범위, 절차, 방식 등을 검토하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는 한편, 실제 재판중계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촬영 등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2) 재판중계연구반이 제시한 재판중계 방안 개요

■ 재판장의 재량에 근거한 법원 주도 재판중계방송

- 법원 주도의 재판중계방송 ⇨ 재판중계방송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 신문·방송 등 언론사가 재판 과정의 촬영, 영상의 송출 및 방송 과정을 주도하게 될 경우 흥미 위주의 사건 선별, 선정적·자극적 보도 및 이로 인한 사



생활·개인정보 침해, 편집으로 인한 재판 내용 왜곡, 대중의 관심을 고려한 재판 희화화 또는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 등 재판중계방송의 부작용들로 거론되는 현상들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재판장의 재량 존중 ⇨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 구체적 타당성
- 또한 피고인 등 당사자의 동의는 필수적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재판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사법 신뢰를 제고한다는 재판중계방송 원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재판중계방송 대상으로 삼는 이상, 피고인 등 당사자의 동의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
- 현행 법원조직법, 규칙은 제4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경우와 제6조 재판장의 명에 의한 경우 모두 당사자의 불복수단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바, 재판중계방송 관련 불복수단 역시 부정함이 타당함
 - 피고인 등 당사자의 권리 보호는 별도의 불복 수단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재판중계방송 요건의 제한, 촬영 및 송출 과정 등에서의 적절한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를 통해 고려함이 타당
 - 재판중계방송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 등 당사자는 재판장의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민사소송법 제138조, 형사소송법 제304조)을 통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고, 별도의 독립한 불복수단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촬영영상 송출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자체 방송채널의 확보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법원이 재판 과정의 촬영의 주체가 되고, 촬영된 영상은 법원 홈페이지와 법원의 인터넷TV 채널 등에 의해 중계되는 방안이 바람직

■ 재판중계에 적합한 사건 유형의 제시

- 재판중계방송에 적합한 사건으로 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인지, 사안의 중대성과 비범성이 인정되는지 등 고려), ② ㉠ 방청수요가 법정의 수용한계를 초과하거나, ③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사건을 제시 ⇨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고려



▣ 재판중계방송의 방식

- 신속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생방송(Live Broadcasting)이나 녹화방송(Recorded Broadcasting)보다는 약간의 시차를 두는 지연중계방송(Delayed Broadcasting)이 일반적으로 더 적정하나, 하나의 중계방식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 재판장 재량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연중계방송의 시차를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가 문제되고, 특히 사후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예를 들어 모자이크 처리 등)가 필요할 경우 그로 인해 시차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되는 증인 신문 등의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아예 화면에 나오지 않게 조치한다면 사후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필요성은 낮아질 것이므로, 법정 내 소요와 같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중계 중단을 위한 목적에서 잠깐의 시차만 둘 수도 있음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재판중계를 위한 촬영 등 지침(안)」 등의 제안

- 재판중계연구반이 제시한 규칙 개정안([별지 1]과 같음)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언론사 등의 신청 및 재판장 허가에 의한 녹음·녹화·중계방송(대상: 공판·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함)을 규정한 규칙 제4조, 제5조 유지
 - 재판중계방송이 기존 규칙 제6조의 법원 내 시설에서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7조를 신설
 - 제6조 표제를 ‘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에서 ‘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내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으로 변경하고, 제7조 ‘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외 중계방송 목적 녹음·녹화·촬영’으로 신설
 - 재판중계방송에 대한 별도의 불복수단은 규정하지 않음
 - 촬영 등 지침은 규칙에 포함하지 않음
- 재판중계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로서 [별지 2]의 재판중계를 위한 촬영 등 지침



(안), [별지 3]의 법정 내 카메라 설치 등 내용도 제안

2.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관한 검토

가. 전면적 실시에 앞선 시범실시의 필요성

▣ 사법부 내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

-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재판중계연구반(반장 및 일부 반원)의 연석회의²⁾ 결과 재판중계연구반 내에서는 재판중계의 필요성과 사법신뢰 향상 방안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하여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비하여 분과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 소송관계인에 의한 재판중계제도의 오남용 가능성, 사법신뢰 향상 방안으로서 적합성에 관한 의문 등을 이유로 재판중계방송의 전면적 실시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중계 대상 사건 유형, 중계의 범위, 중계된 녹음 또는 녹화물의 보존 여부 등 구체적 쟁점에 관하여도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와 분과위원회 논의 사이에 의견차가 존재함
 - 중계 대상 사건 유형: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상대적으로 적합한 절차로 제시한 반면, 분과위원회에서는 형사재판 공개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민사 또는 행정 가처분 사건이 중계에 적합한 절차로 논의됨
 - 중계의 범위: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는 대상 사건 전체의 중계를 전제로 한 반면, 분과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쟁점이 확실히 드러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집중적으로 개진되는 최종 공판기일 또는 최종 변론기일만을 중계하는 방안의 활용 가능성도 논의됨
 - 중계된 녹음 또는 녹화물의 보존 여부: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는 일회성 중계만을 전제로 한 반면, 분과위원회에서는 녹음 또는 녹화물의 보존 필요성 및 보존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논의됨

2) 2023. 5. 22. 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



- 법원행정처가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요약본 9쪽, 보고서 25쪽) 재판중계방송에 관하여 법관들의 관점이 대단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정책연구용역단에서 2023. 5.말 ~ 2023. 6.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공개 원칙의 구현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법관 응답자의 44.7%, 일반직 응답자의 55.7%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재판중계방송 확대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두 차례의 설문조사 외에 사법부 내 재판중계방송의 실시에 관한 일반적, 공개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정책연구용역단의 일반국민 대상 의견조사 결과 재판방청의 허용만으로 재판공개 원칙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여, 재판중계방송의 확대 요구가 점차 대두할 것으로 보임
- 정책연구용역단의 일반국민 대상 의견조사 결과 법조직역 응답자의 59.5%가 재판중계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검사(39.4%)보다 법학자(100%), 변호사(67.8%)의 긍정응답 비율이 높음
- 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일반에 공개 대상 사건의 범위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적 영역 보호 필요성과의 균형점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할 만한 주요 외국의 사례 역시 일반적·전면적 재판중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 시범실시를 통한 재판중계 확대의 청사진 제시

- 시범실시를 통하여 재판중계 확대에 대한 사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재판중계 확대와 관련한 우려의 현실화 정도나 실제 재판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그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중계에 적합한 사건 유형의 발굴, 적절한 중계 대상과 범위의 모색,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의 인식과 대처 등이 가능함



나. 시범실시 방안

1) 재판중계에 관한 시범실시안

■ 재판장의 재량에 근거한 법원 주도의 재판중계방송 ☞ 그밖에 다음에서 별도 검토하는 항목 외에는 재판중계연구반이 제시한 재판중계 방안, 특히 촬영 등 지침(안)이나 법정 내 카메라 설치에 관한 매뉴얼 등 기술적·세부적 사항을 채택

■ 재판중계에 적합한 사건 유형의 제시

- 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과 비범성 등 고려)로서 ② 방청수요가 법정의 수용한계를 초과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사건
- 심리가 집중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공표되는 가처분·집행정지 등 신청사건, 전문적 사안에 관한 민사사건 등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재판중계 여부에 대한 재판장의 재량을 존중하되 참고적 예시라는 전제임
 - 사회적 파장이나 관심도가 큰 민사·행정사건에서 가처분·집행정지를 위한 심문기일 또는 주요 쟁점에 관한 쌍방대리인의 최종변론 내지 선고기일
 - 공적인 인물에 대한 공공의 관심·영향력이 큰 형사사건(특히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사건)의 공판기일
 - 위와 같은 사건의 항소심 최종 집중변론 등에서도 활용 가능함
- 시범실시 전 이미 소송이 계속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시범중계 가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한정된 기간 안에 (최종변론기일 이후만을 남겨둔 사건이나 항소심 사건 등을 포함하여) 재판중계 시범실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중계 시범실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후 새롭게 소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만을 중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② 시범실시 공표와 실제 시범실시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 시범실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중계 시범실시 공표 당시 계속중인 사건도 중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

■ 중계의 방법

- 재판중계연구반 논의는 영상과 음성의 동시 송출에 의한 중계를 전제로 하는바, 이는 영상 시대에 적합한 중계 방식을 선택하여 재판중계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재판중계에 대한 법관 및 소송관계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변론 자체에 대한 집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성만의 송출 또는 영상과 고정 자료화면의 송출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중계도 고려할 수 있음
- 시범실시 시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① 영상과 음성의 동시 송출에 의한 중계, ② 음성만의 송출에 의한 중계, ③ 영상과 자료화면의 송출에 의한 중계 중 선택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함

■ 중계의 범위

- 재판중계연구반 논의는 제공되는 정보량의 확대를 위하여 재판 전체 중계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증인에 대한 신문 등 재판 일부에 대한 중계 제한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가능함을 전제로 하였음
- 시범실시 시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중계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판 전체의 중계가 아닌 최종 변론·공판 기일, 판결선고기일 등 재판 일부만의 중계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판중계방송의 기술적 방식: 지연방송, 카메라 위치 등

- 송출 경로로는 CourTV,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시범실시 단계에서도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의 제안과 같이 ‘돌발상황 대처를 위한 최소 시간의 지연중계방송’이 적합하며, 시범실시 결과 돌발상황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지연 시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임



- 법정 내 카메라 위치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별지2]와 같이 시범실시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별지3]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 중 ‘법정 내 카메라 설치 등에 관한 제안’을 참고하여 법정 내 카메라 설치가 가능함

■ 신청권 및 불복의 허용 여부 등

-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당사자의 신청권, 동의, 불복수단 등에 관하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통하여 재판중계를 실시하되, 다만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시범실시를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방안

■ 재판중계방송을 위한 TFT 구성·운영

- 재판중계에 관심 있는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예: 2년) TFT를 구성하여 중계방송 실시 과정, 그로부터 도출된 문제점과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 중계 실시 여부와 구체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 각급법원 단위로 다수의 TFT를 구성하기보다는 각급 법원의 여러 법관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1개 TFT를 구성하여 각급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중계 상황과 결과가 효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시팀(실제로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중계를 시범실시 할 법관)과 지원팀(직접 시범실시를 하지는 않더라도 세부사항의 준비·지원활동을 수행할 법관 등)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음
- 기간 내 최소 10건 내외의 시범실시를 목표로 함

■ 법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재판중계 시범실시 매뉴얼 배포

- TFT 구성원이 아닌 법관도 시범실시 기간 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판중계방송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책받침³⁾ 또는 소책자 핸드북⁴⁾ 형태로 재판중계 대상 사건의

3) 다만 기왕의 책받침처럼 플라스틱(비닐) 코팅을 하는 것은 환경에 유해하므로, 향후에는 두꺼운 재질의 종이로만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법정에 들어갈 때 휴대 가능한 소책자 핸드북 형태의 ‘법정운영 매뉴얼’ 안에 재판중계에 관한 내용을 담



예시, 중계 방법과 범위에 관한 사항, TFT에 참여 또는 접근할 방법, 재판중계 관련 지원에 대한 접근 방법 등을 안내함

▣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위한 로드맵(안)

시범실시 준비	TFT 구성 및 활동 (2년 + α)			제도 수립
법원행정처	법관 · 외부자문위원 · 법원행정처 등			법원행정처
규정 정비/지원방안 마련 등	준비: 1~2월	실시: 2년	마무리: 1~2월	시범실시 종합평가 및 사후 방안 확립
	사건선정 등 세부사항 준비	시범실시 및 지원	분석 · 평가 및 제안	

다. 시범실시를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

1) 관련규정의 정비 필요성

-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범실시 대상인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원 외부로 송출하는 ‘재판장의 명에 의한 재판중계’ 관련 규정이 미비
- 법원조직법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재판중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재판장 직권으로 재판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 및 그 내용에 관한 검토 필요
- 규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재판중계연구반의 규칙 개정안,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서 제안된 규칙 개정안의 비교표는 [별지 4]와 같음

2) 관련규정 정비 시 고려할 문제

▣ 쟁점 1: 새로 도입하는 재판중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 구체적으로 재판중계연구반 개정안 제7조 제3항은 제6조 제4항만을 준용하고, 제6조 제3항(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사전 승인 절차)을 준용하지 않는 반면, 사법정책연구원 제안에서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하여 재판중계의 경우에도 법원

는 방안



행정처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① 기존의 승인절차는 다른 법원/법정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시설 관리권자의 관리권 행사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고, 다른 법정이 아닌 본래의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중계의 경우 승인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② 기존에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극적이고 널리 재판공개를 실천하는 재판중계에 대해서 오히려 승인 절차가 없는 것은 체계적으로 불균형하므로 재판중계에 대해서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아예 기존의 승인절차 자체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상정할 수 있음

- 재판중계 결정 자체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장의 재량 존중, 법원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하여 부정함이 상당하나, 한정된 설비의 효율적 이용, 다수 법원의 중계 일정 경합 시 조정 등 재판중계 실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실무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중계 사실 인지 및 지원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인정됨 ⇒ 관련 규정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재판중계 시범실시 사실의 사전보고 의무를 정하는 방안 제안함

▣ **쟁점 2: 재판중계에 수반되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 공개와 관련하여 면책 또는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관련 규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판결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열람·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소송기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판중계 시범실시의 활성화 및 시범실시에 관여한 법원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재판중계 시범실시 시에도 법원공무원의 면책규정과 재판중계를 이용한 특정 행위의 금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 분과위원회에서의 다수 견해임



- 다만 법원공무원의 면책이나 국민에 대한 특정 행위의 금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법규적 효력에 비추어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앞서 위와 같은 사항을 규정 내용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법률 차원의 입법적 준비가 필요하므로, 결국 재판중계방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나 입법 환경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① 법률 차원의 규정정비를 하는 방안과 ② 규칙 차원에서 규정정비를 하는 방안을 아울러 마련하여 시범실시를 위해 탄력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쟁점 3: 재판중계 시범실시 사실 공표 후 새로 접수되는 사건만을 재판중계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

-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규칙 등을 개정할 때 부칙에 위와 같은 취지를 명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효과적인 시범실시를 위하여 재판중계 대상 사건의 범위를 소 또는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현단계에서는 재판중계 시범실시 대상 사건의 시적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규칙 규정을 제시하지 않음

■ 쟁점 4: 재판중계 시범실시 시 관련 녹화 또는 녹음물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

-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관한 사법정책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한 원본 파일의 보존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고, 더 나아가 재판공개 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녹화 또는 녹음물의 보존 및 계속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됨
- 재판중계 시범실시 시 원본 파일의 보존 및 계속적 공개 여부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업무부담의 가중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되,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현단계에서 위의 쟁점에 관하여 미리 방향을 정해두고 규정 정비안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임

3) 구체적 규정 정비 방안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법규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 차원의



규정 정비가 필요함

- 재판중계 시범실시와 관련한 법원공무원의 면책 및 국민에 대한 특정 행위의 금지는 시범중계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이는 입법적 정비의 대상임
- 이에 따라 ① 법률 차원의 규정 정비를 통한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우선순위로 하되,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한 입법적 정비가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하여 ② 규칙 차원의 규정 정비를 통한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차순위로 제안함
- 단,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시범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시범실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법률 및 규칙 제·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안]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재판중계 시범실시

- 특별법 제정 또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재판중계 시범실시의 목적: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헌법 제 109조에 규정된 재판 공개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중계방송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
 - 관련 공무원의 면책: 다음의 예시적 내용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에 준하는 조항을 마련함

<면책규정의 예시>

법원조직법 제59조에 의하여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한 법원공무원은 그 행위가 재판장의 지휘·감독을 준수한 것인 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녹화, 촬영,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허가한 재판장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재판중계로 지득한 내용 또는 자료와 관련된 특정 행위의 금지: 다음의 예시적 내용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5항에 준하는 조항을 마련함

<금지규정의 예시>

방송통신매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재판중계방송을 청취하거나 녹화 또는 녹음한



재판중계방송의 파일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그밖에 시범중계의 구체적 대상, 절차,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도록 함

■ [2안] 규칙의 제·개정을 통한 재판중계 시범실시

- [2-1안] 재판중계 시범실시용 대법원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⁵⁾ [별지 5] 참조
 - 목적 규정, 재판중계연구반의 규칙 개정안 제7조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함
- [2-2안] 현행 규칙에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위한 규정(제7조 신설)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 [별지 6] 참조
 - 시범실시용임을 명시하여 재판중계연구반의 규칙 개정안 제7조의 내용을 추가
 - 부칙에 시범실시 관련 규정의 효력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조항’을 두는 것을 전제로 기재하였으나, 일몰조항을 두지 않은 채 적정한 기간의 시범실시를 거친 이후 규칙을 재개정할 수도 있음
- 한편, [1안]과 같이 법률 차원에서 관련 공무원의 면책이나 국민에 대한 특정 행위의 금지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판중계 시범실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칙에 가급적 이에 준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관련 공무원의 면책 관련: 규칙에 시범중계 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주의의무 규정을 두는 방안, 관련 공무원의 주의사항을 규칙에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규칙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였음을 항변 사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됨
 - 국민에 대한 특정 행위의 금지 관련: 대법원 홈페이지의 공개변론 동영상 계

5) 이 경우 현행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시판에는 “대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변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되어 있는바, 시범중계 시에도 중계 화면에 이와 유사한 포괄적인 안내 또는 경고문구⁶⁾를 표시하고 관련 위법행위의 규율은 일반 민사 또는 형사법에 맡기는 방안이 있음

6) 헌법재판소는 변론동영상 게시와 관련하여 법령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홈페이지의 변론동영상 게시관에 다음과 같은 안내를 게시하고 있음

- * 게재 목적: 변론을 방청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개별적 시청을 위한 것입니다.
- * 이용 조건: 허가 없이 선고·변론 동영상을 복사(캡처)·재가공 하거나 배포·송신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 * 불법행위 책임: 상기 이용조건을 위반한 행위자는 민사상·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 재판 중에 거론되는 증인·참고인 등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음소거 등으로 처리되어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